


##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

최신 임상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를 반영하고 보다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〈 항목별 주요 변경사항 〉

평가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정맥 내 투약	· ‘치료적 목적’ 및 수액의 횟수 산정 기준 모호	· 투여 목적 관계없이 지속적 수액, 영양제, 비타민, TPN 횟수 산정 가능 ·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수액에 여러 약물을 혼합하여 투여더라도 1회로 산정	(p.26~31)
배변·배뇨	· 좌약, 제품으로 된 관장액 사용 평가 불가	· 배변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므로 평가 가능	(p.67~71)
개인위생	· 개인위생 평가 범위 모호 · 스스로 머리 감기 가능한 환자에게 정맥주사 유지 사유로 도움 시 평가 불가	· 개인위생을 위한 일련의 행위 중 ‘기타 식제 - 손발톱 깎기, 면도, 회음부 간호 평가 불가’ · 정맥주사, 치료기기 등으로 환자 스스로 개인위생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준 경우 평가 가능	(p.72~75)
옷 입기	-	· 보조기 착용방법을 교육하면서 착용을 도와준 경우 - 최초로 교육하며 도와준 첫 날만 평가	(p.78~79)
지시이행 및 정서상태	·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 불가	· 환자가 위험행동을 보이거나,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고 관찰했다면 평가 가능	(p.80~84)

 '26.1.16.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

 간호필요도 평가 매뉴얼(2026.1.) 주요 변경사항 필수 확인

- 영양기관정보마당, 사이버연수원, 온라인 커뮤니티 ‘공지사향’ 게시 ... PDF파일(1.8.)

※ 영양기관정보마당 > 간호간병 > 사업신고 > 정기신고 > 간호필요도 정기신고 > ‘참고자료 다운로드’ 에서도 확인 가능

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견을 기반으로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의 지속적인 검토·보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, 제공기관 평가 담당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☎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3팀 033-736-4351~2